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민형배·김영배·정준호

김문수 • 이수진 • 문정복

이연희 · 김용민 · 홍기워

주철현 • 박균택 • 양부남

전진숙 • 정진욱 • 안도걸

조인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 대전 •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것입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광주회생법원	광주광역시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 전	대 전	대전광역시
대 구	대 구	대구광역시
광 주	광 주	광주광역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